

#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우리G PIMCO글로벌투자등급증권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UH)

2. 효력발생일 : 2023.08.11(금)

3. 변경 사유 :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채권평가회사 사명변경 (NICE채권평가 → NICE피앤아이)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2022.07.25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투자비용	-	<a href="#">합성총보수·비용 추가</a>
투자비용 - 동종유형총보수	2022.06.30 기준	<a href="#">2023.06.30 기준</a>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2022.07.25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운용전문인력	2023.07.07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투자자 유의사항	<p>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년(<a href="#">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a>)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p>1.~ 9. &lt;생략&gt;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p>	<p>1.~ 9. &lt;현행과 동일&gt;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a href="#">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a></p>

	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href="#">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a>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2022.07.25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투자비용	-	<a href="#">합성총보수·비용 추가</a>
투자비용 - 동종유형총보수	2022.06.30 기준	<a href="#">2023.06.30 기준</a>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2022.07.25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운용전문인력	2023.07.07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투자자 유의사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후 1년( <a href="#">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a>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a href="#">연혁추가</a>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2.07.07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2.07.07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p>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다. 모자형 구조</p> <p>[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개요]</p> <p>- 펀드규모</p>	<p>원화 약 14조 2,442억원 (적용환율: 1,292.90원) (2022.06.30 기준)</p>	<p><u>원화 약 13.6조원(적용환율: 1,419.30원) (2022.10.31 기준)</u></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가. 투자대상(투자대상의 종류 / 투자한도 / 투자대상의 조건)</p> <p>[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p>	<p>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생략)~ 15일 이내로 함</p> <p>가. ~ 마. &lt;생략&gt;</p> <p>주1) ~ 주2) &lt;생략&gt;</p>	<p>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생략)~ 15일 이내로 함</p> <p>가. ~ 마. &lt;현행과 동일&gt;</p> <p>주1) ~ 주2) &lt;현행과 동일&gt;</p> <p><u>주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u></p> <p><u>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ETF 해당)</u></p> <p><u>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 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모든 공모펀드 해당)</u></p> <p><u>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u></p> <p><u>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가. 일반위험</p> <p>- 재간접투자위험</p>	<p>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p>	<p><u>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u></p>

	<p>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u>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p>	<p>&lt;신설&gt;</p>	<p><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p>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p>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u>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u>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u>)이</p>

	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 증권대차 거래 위험	<신설>	<a href="#">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a>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7.88%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a href="#">7.62%</a> 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b>장내파생상품:</b>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 <b>장내파생상품:</b>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a href="#">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a>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22.07.25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7)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2022년6월30일(유형:해외60재간접)	<a href="#">주7)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2023년6월30일(유형:해외60재간접)</a>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022.07.25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신설1>
1. 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a href="#">나. 재무상태표</a>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022.07.25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2022.07.25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나. 연도별 수익률</p>	<p>2022.07.25 기준 주1) ~ 주2) &lt;생략&gt;</p>	<p><u>2023.07.25 기준</u> 주1) ~ 주2) &lt;현행과 동일&gt;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6) 우리G PIMCO글로벌투자등급 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UH)Class Pe1 : 최근 4년차 수익률은 11.87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p>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p>	<p>2022.07.25 기준 주1) &lt;생략&gt;</p>	<p><u>2023.07.25 기준</u> 주1) &lt;현행과 동일&gt;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p>
<p>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p>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21.12.31 기준	<a href="#">2022.12.31 기준</a>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8.05 기준	<a href="#">2023.07.25 기준</a>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NICE 채권평가	<a href="#">NICE피앤아이</a>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p>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하여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p>	<p>집합투자업자는 ~(중간생략)~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하여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a href="#">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a>)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a href="#">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a>)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a href="#">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a>)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p>

	<p>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p>	<p>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a href="#">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a> <a href="#">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a>)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p>	<p>집합투자업자는 ~(<a href="#">중간생략</a>)~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p>① &lt;생략&gt;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 ⑦ &lt;생략&gt;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lt;생략&gt;</p>	<p>집합투자업자는 ~(<a href="#">중간생략</a>)~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p>① &lt;현행과 동일&gt;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a href="#">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a>) ③ ~ ⑦ &lt;현행과 동일&gt;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a href="#">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a> <a href="#">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a>)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a href="#">시행령 제81조제3항의제1호</a> <a href="#">집합투자기구의</a></p>

		<p>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⑩ &lt;현행과 동일&gt;</p>
--	--	---

<신설1>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0)% 상승되었으며, 이는 빈번한 환매요청에 의한 주식의 매도가 증가되었고 이에 투자신탁 설정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빈번한 환매가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 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4기 0백만원, 3기 0백만원, 2기 0백만원 발생)

주 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4기 0백만원, 3기 0백만원, 2기 0백만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00	0.00	0.00	0.00	0.0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3,680.33	0.00	0.00	8,413.54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3,680.33	0.00	0.00	8,413.54	0.00	0.00

주 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자본시장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참고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00	0	0.00	0.00	0.00	0.00

주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 적용

(분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공모집합투자기구(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단기금융)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매입방법/환매방법: 제X영업일 - 대차대조표	- 매입방법/환매방법: X영업일 - 재무상태표

<p>제2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p>	<p>① 집합투자업자는 ~<u>(중간생략)</u>~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 ④ &lt;생략&gt;.</p>	<p>① 집합투자업자는 ~<u>(중간생략)</u>~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에 따른 <u>기준가격의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u>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u>기준가격 산정일 전날</u>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 ④ &lt;현행과 동일&gt;</p>
<p>제43조(투자신탁의 해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u>(중간생략)</u>~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 &lt;생략&gt;</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④ &lt;생략&gt;</p>	<p>① 집합투자업자는 ~<u>(중간생략)</u>~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 &lt;현행과 동일&gt;</p> <p>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u>시행령 제 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u>시행령 제 81조제3항의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④ &lt;현행과 동일&gt;</p>
<p>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① &lt;생략&gt;</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중간생략)</u>~ 지체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1. &lt;생략&gt;</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3. ~5.&lt;생략&gt;</p> <p>③~⑨ &lt;생략&gt;</p>	<p>①&lt;현행과 동일&gt;</p> <p>② 집합투자업자는 ~<u>(중간생략)</u>~ 지체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p> <p>1. &lt;현행과 동일&gt;</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p>

		3. ~5.<현행과 동일> ③~⑨ <현행과 동일>
--	--	--------------------------------